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77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김남국·고영인·김승원

김철민 • 문진석 • 양정숙

오영환・유정주・이규민

이수진 · 장경태 · 전용기

전해철 · 정청래 · 최혜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임.

현행법은 부착명령 선고 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나, 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까지는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9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0부터 03:59의 야간 시간 대에 성폭력범죄의 42.1%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야간에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

성이 있음.

한편, 현행 벌칙 조항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준수사항 이행 동기의 저하 및 보호관찰관의 효율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제14조의3 신설 및 제39조 등)

법률 제 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의 제목 "(부착기간의 연장 등)"을 "(부착기간의 연장)"으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을 "연장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등) 피부착명령자 또는 피부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천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②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 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

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③ (생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
	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
	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
	<u>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u>
	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u>하다.</u>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제14조의2 <u>(부착기간의 연장)</u> ① -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u>연장하거</u>	<u>연장하는</u>
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삭 제>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 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 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 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피부착명령자 또는 피부착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
항을 부과하거나 추가, 변경 또
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①
3천만원
<u>.</u>
②

제14주의3(주수사항의 추가 • 변경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 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 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 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u>5백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 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 호·제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 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반한 때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u>1천만원</u>
③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u>
천만원